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-136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2월 14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당직근무자의 근무 중 휴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숙직근무자에게만 부여하였던 휴무를 일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일직과 숙직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휴일 근무에 대해 보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문 개정을 통해 일직 근무시간에 대한 구분 재정비 (안 제3조)
- 나. 제목 및 조문 개정을 통해 당직근무자에 대한 교대 휴식과 일직근무자에 대한 휴무 부여 근거 마련 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(참조 : 총무과장, ☎ 450-7107, FAX 2201-1988, E-mail : kimda51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
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중 “공휴일” 을 “주말 및 공휴일”로, “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” 을 “정상근무일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“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” 을 “당직근무자의 휴식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숙직” 을 “당직”으로, “취침” 을 “휴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

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에 해당

제14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3조(당직의 구분 및 수당) 및 4조(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)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행정국 총무과 김다혜(02-450-7107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당직의 구분 및 수당)	제3조(당직의 구분 및 수당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일직은 <u>공휴일</u> 에 두며, 그 근무시간은 <u>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</u> 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	② —— <u>주말 및 공휴일</u> ——,— —— <u>정상근무일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.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<u>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등</u>)	제4조(<u>당직근무자의 휴식 등</u>)
① <u>숙직근무자는</u>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<u>취침</u> 할 수 있다. 다만,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.	① <u>당직근무자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 <u>휴식</u> ————. — —, ————— ————. ————.
② <u>숙직근무자</u> 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 전일 휴무토록 하되, <u>숙직</u>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	② <u>당직근무자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.—, <u>당직</u> ———— ———— ————.

< 관 계 법령 >

법규명	지방공무원 복무규정
제2조의6(위임규정)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	

법규명	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<p>제7조(당직근무와 비상근무) ① 일직·숙직·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·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1996.04.02, 2003.12.30, 2012.02.14></p> <p>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1996.04.02, 개정 2012.02.14></p> <p>③ 당직근무자에게는 일·숙직수당을 지급하며,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 <신설 2003.12.30></p> <p>④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협력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,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<개정 1996.04.02, 2003.12.30, 2012.02.14></p> <p>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1996.04.02, 2003.12.30, 2012.02.14></p>	

과장【총무과】				담당팀장【총무팀】				담당자			
성명	윤석춘	연락처	450-7100	성명	이석구	연락처	450-7101	성명	김다혜	연락처	450-7107